

한 눈에 보는 2015 장애인통계



목차

1 장애인 인구 현황

1.1 등록장애인 현황

- 등록장애인 추이 및 전체인구 대비 비중 1
- 장애유형별 현황 1
- 성별 현황 2
- 장애정도별 현황 2
- 연령별 현황(2014년) 3
- 장애인의 고령화 - 55세 이상 비중 추이 3
- 장애인의 고령화 - 장애정도별 비중(2014년) 4
- 지역별 현황(2014년) 4

1.2 장애 출현 현황

- 장애 출현율 추이 5
- 장애가구 출현율 추이 5
- 장애인 등록율 추이 6
- 장애발생 원인(2014년) 6

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1 장애인 경제활동 총괄

- 주요 경제활동지표(2014년) 7
- 15세 이상 경제활동지표 7
- 15세~64세 경제활동지표 7
- 주요변수별 경제활동지표(2014년) 8
- 주요변수별 경제활동지표(2014년) 9
- 경제활동상태 구성(2014년) 10
- 경제활동상태 이동현황(2014년) 10

2.2 장애인 취업자 특성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2014년) 11
- 취업자 산업 현황(2014년) 11
- 취업자 직업 현황(2014년) 12
-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현황 12

2.3 장애인 고용서비스 욕구

- 필요한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반 13
- 필요한 세부 취업지원 서비스 13

3 기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3.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이 14
- 최근 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5
-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4년) 15
-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4년) 16
-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4년) 17

3.2 전체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	18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효과에 관한 인식	18
● 장애인 고용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	19

4 장애인 교육 및 복지

4.1 장애인 교육 현황	
● 장애인 학력 구성	20
● 고등학교 수학 형태	20
● 특수교육 현황	21
●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2014년)	21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2014년)	21

4.2 장애인 복지 현황	
● 장애인 복지시설 수	22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인원 현황(2013년)	22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23
●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소비 지출액	23
●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23

4.3 장애인 일상생활	
●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2014년)	24
●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2014년)	24
●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2014년)	24

5 해외 장애인 통계

5.1 OECD 장애인 통계	
● 국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출현율	25

5.2 일본의 장애인 통계	
● 장애인 인구 - 장애유형별	26
●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6
● 2014년 의무고용현황	26

5.3 독일의 장애인 통계	
● 장애인 인구 - 연도별	27
●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7
● 2012년 의무고용현황	27

5.4 미국의 장애인 통계	
● 장애인 인구	28
●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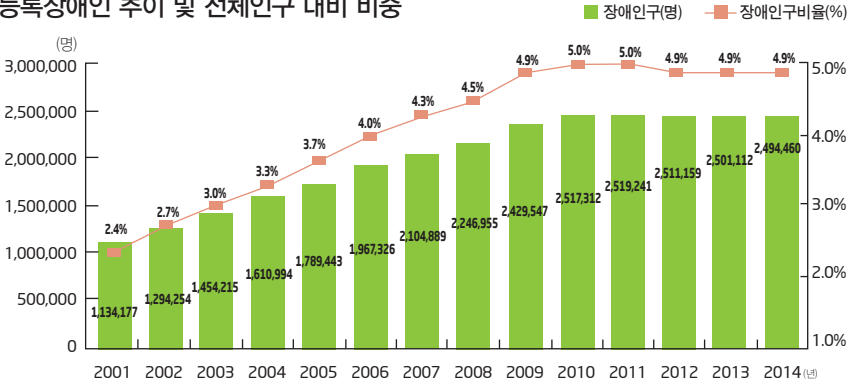
5.5 호주의 장애인 통계	
● 장애인 인구	29
●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29

주요 용어 해설	30
----------	----

1. 장애인 인구 현황

1.1 등록장애인 현황

>>> 등록장애인 추이 및 전체인구 대비 비중



주 1 : 장애인구 비율(%) = (등록장애인 수/주민등록인구 수) × 100

주 2 :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10개 유형(2000.1.)→15개 유형(2003.7.)

주 3 : 장애유형 용어변경 : 정신지체→지적장애(2008.2), 발달장애→자폐성장애(2008.2), 간질장애→뇌전증장애(2014.7.)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 장애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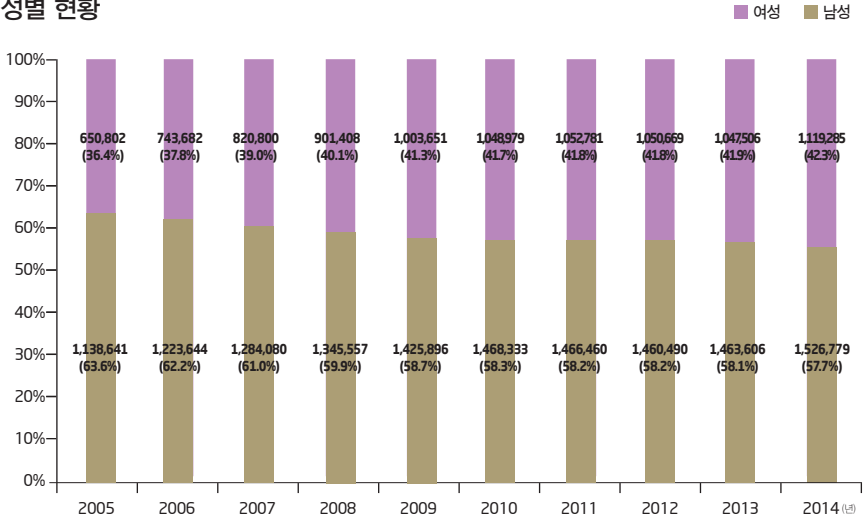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장애인 수	비율
전 체	2,517,312	100.0	2,519,241	100.0	2,511,159	100.0	2,501,112	100.0	2,494,460	100.0
지 체	1,337,722	53.1	1,333,429	52.9	1,322,131	52.7	1,309,285	52.3	1,295,608	51.9
뇌 병 변	261,746	10.4	260,718	10.3	257,797	10.3	253,493	10.1	251,543	10.1
시 각	249,259	9.9	251,258	10.0	252,564	10.1	253,095	10.1	252,825	10.1
청 각 / 언 어	277,610	11.0	278,530	11.1	276,332	11.0	273,229	10.9	271,054	10.9
지 적	161,249	6.4	167,479	6.6	173,257	6.9	178,866	7.2	184,355	7.4
자 폐 성	14,888	0.6	15,857	0.6	16,906	0.7	18,133	0.7	19,524	0.8
정 신	95,821	3.8	94,739	3.8	94,638	3.8	95,675	3.8	96,963	3.9
신 장	57,142	2.3	60,110	2.4	63,434	2.5	66,551	2.7	70,434	2.8
심 장	12,864	0.5	9,542	0.4	7,744	0.3	6,928	0.3	6,401	0.3
호 흡 기	15,551	0.6	14,671	0.6	13,879	0.6	13,150	0.5	12,445	0.5
간	7,920	0.3	8,145	0.3	8,588	0.3	9,194	0.4	9,668	0.4
안 면	2,696	0.1	2,715	0.1	2,709	0.1	2,696	0.1	2,689	0.1
장 루 · 요 루	13,072	0.5	13,098	0.5	13,374	0.5	13,546	0.5	13,867	0.6
뇌 전 증	9,772	0.4	8,950	0.4	7,806	0.4	7,271	0.3	7,084	0.3

주 : 장애유형 용어변경 : 정신지체→지적장애(2008.2), 발달장애→자폐성장애(2008.2), 간질장애→뇌전증장애(20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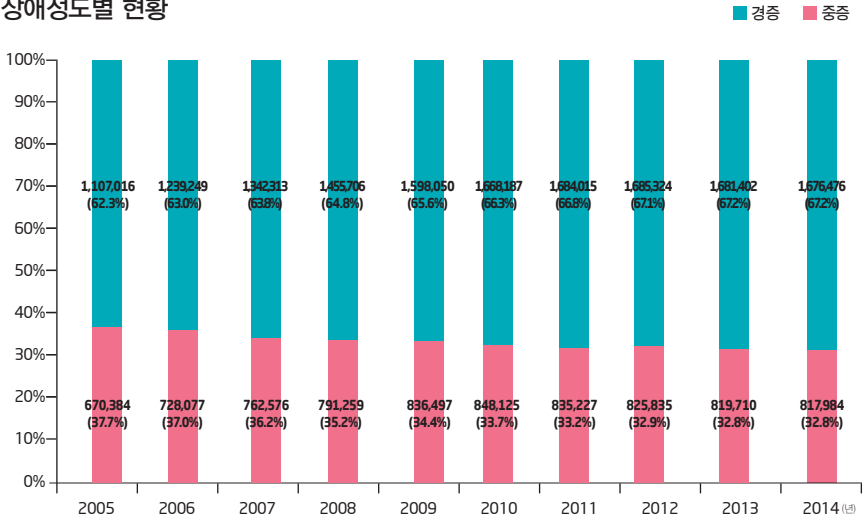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성별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장애정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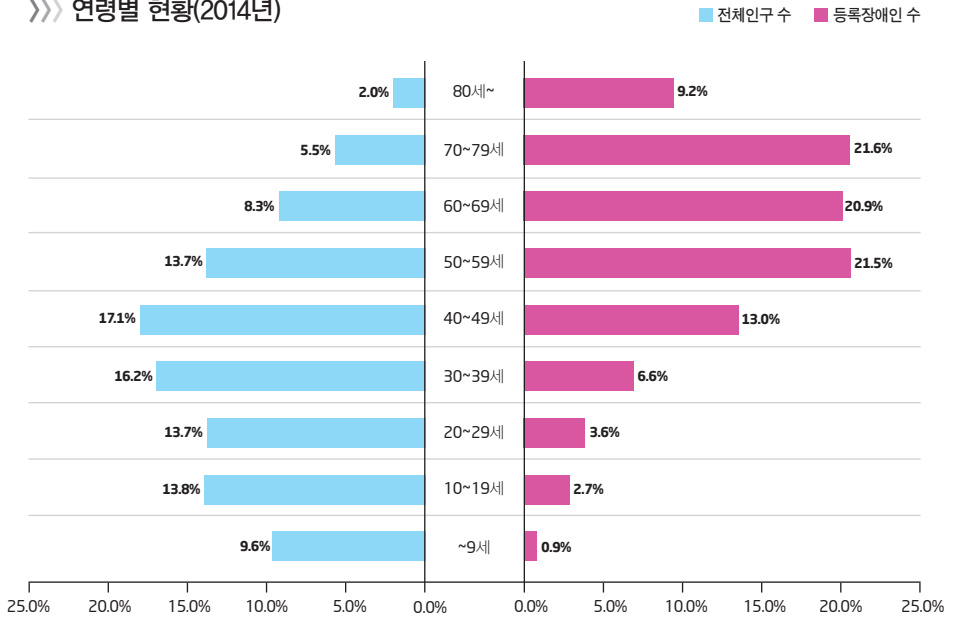


주 1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단 호흡기, 뇌전증장애 3급은 2010년부터 중증으로 인정됨)

주 2 : 지체 3급 장애인의 경우는 '2014 전체장애인현황'의 지체 3급 장애부위 정보를 활용하여 중증비율(38.8%)을 산출하여 각 연도에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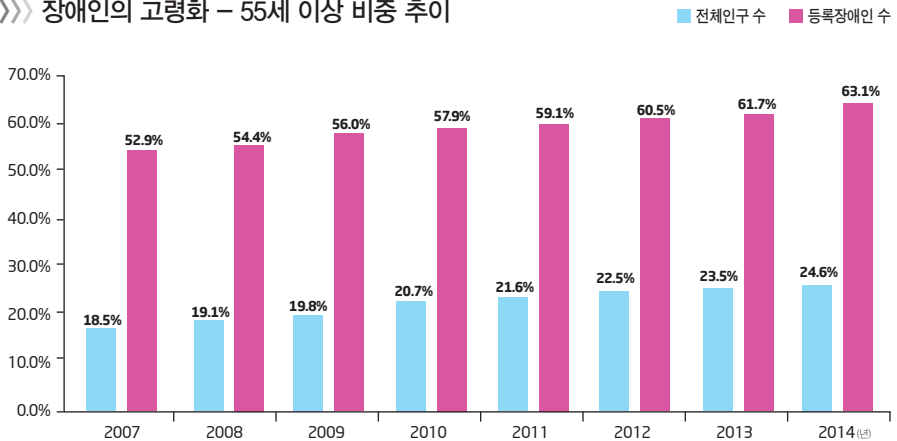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연령별 현황(2014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등록장애인현황」, 2015.6.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2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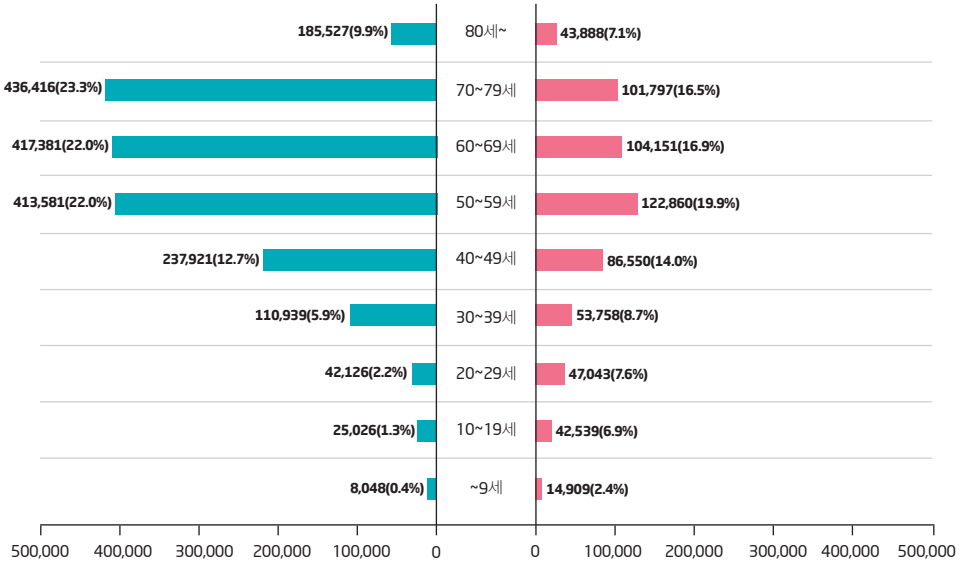
>>> 장애인의 고령화 - 55세 이상 비중 추이



주 : 각 총합계수에서 55세 이상 인구와 5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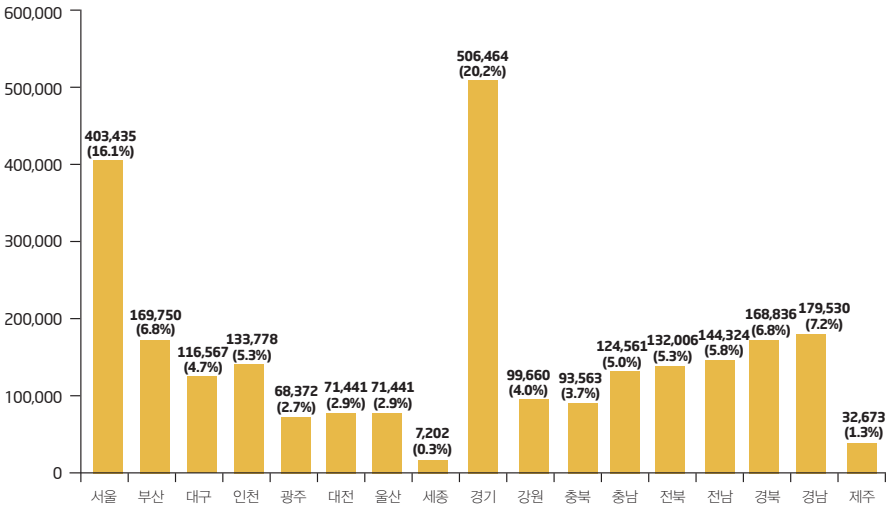
>>> 장애인의 고령화 - 장애정도별 비중(2014년)

■ 경증 ■ 중증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등록장애인현황」, 2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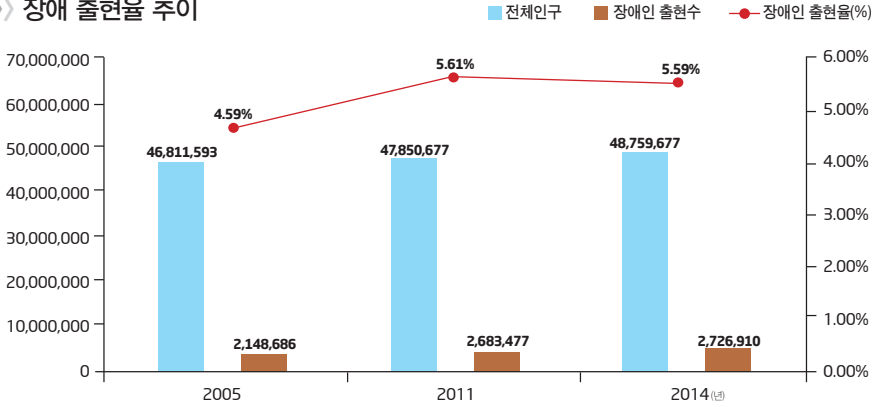
>>> 지역별 현황(2014년)



주 : 시도별 등록장애인 비율(%)=(시도별 등록장애인 인구/전체 등록장애인 인구)×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등록장애인현황」, 2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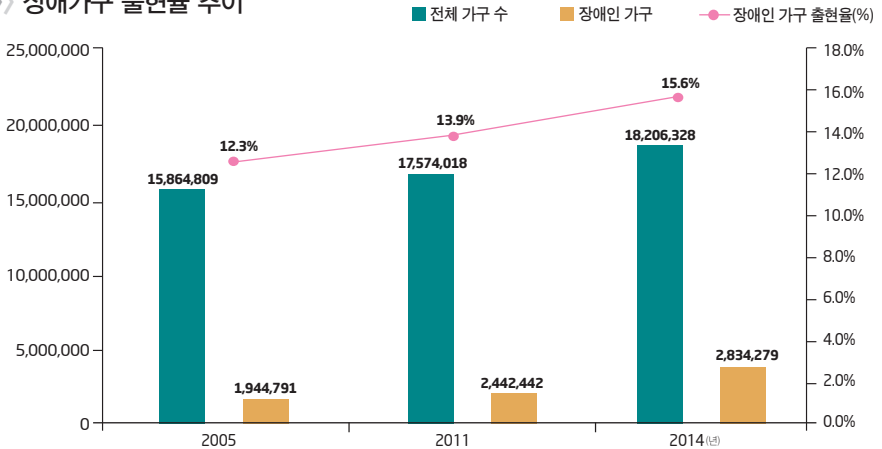
1.2 장애 출현 현황

》》 장애 출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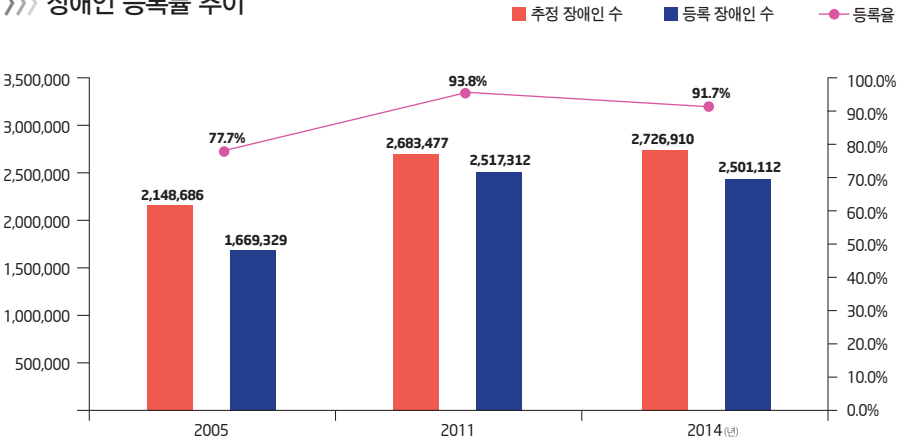
- 주 1: 전체 장애인 출현수는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함
 2: 2005년 출현율 산정을 위하여 분모로 사용한 인구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가집계 결과 자료 중 군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것으로 재가인구(46,727,073명)와 시설인구(84,520명)를 포함한 총 46,811,593명임
 3: 2011년 출현율 산정을 위하여 분모로 사용한 인구는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자료 중 군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것으로 재가인구(47,708,423명)와 시설인구(142,254명)를 포함한 총 47,850,677명임
 4: 2014년 출현율의 분모로 사용한 인구는 2013년 장애인구추계자료 중 군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것으로 재가인구(48,560,591명)와 시설인구(199,086명)를 포함하여 총 48,759,677명임
 5: 장애 출현율(%)=(장애인 출현수/전체 인구)×100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5.6.

》》 장애가구 출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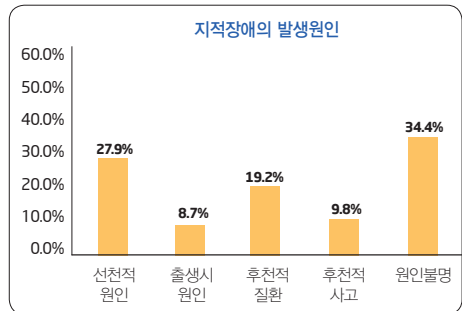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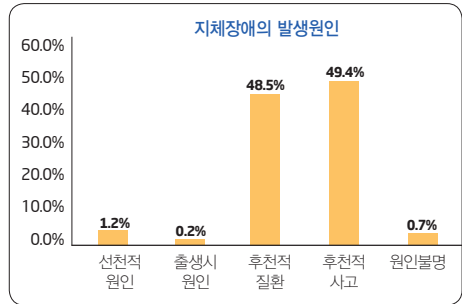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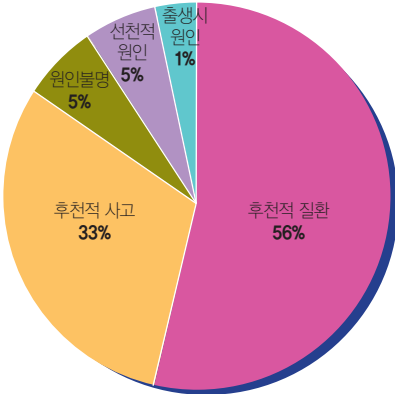
- 주 1: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장애가구 출현율(%)=(장애인 가구/전체 가구)×100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5.6.

>>> 장애인 등록률 추이



주 1 : 2011년 자료는 2010년 4/4분기 현재 등록 장애인수임(보건복지부)
 2 : 2014년 자료는 2013년 4/4분기 현재 등록 장애인수임(보건복지부)
 3 : 각년도 추정 장애인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출현 장애인구 추정수임
 4 : 장애인 등록률(%)=(등록 장애인수/추정 장애인수)×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5.6.

>>> 장애발생 원인(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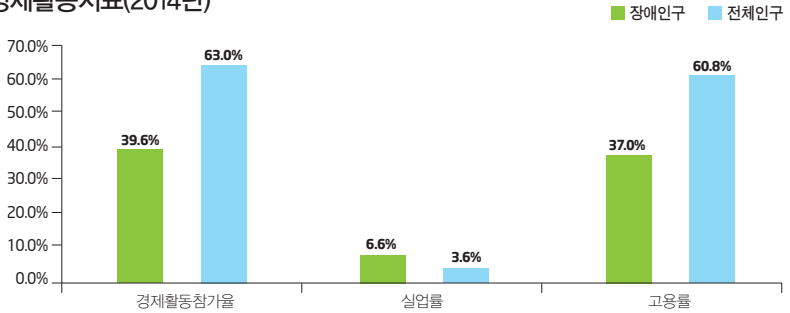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5.6.

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2.1 장애인 경제활동 총괄

>>> 주요 경제활동지표(2014년)



주 1 : 장애인구 비율(%)=(등록장애인 수/주민등록인구 수) X 100

2 :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10개 유형(2000.1)→15개 유형(2003.7)

3 : 장애유형 용어변경 : 정신지체→지적장애(2008.2), 발달장애→자폐성장애(2008.2), 간질장애→뇌전증장애(2014.7)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1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 5월)」, 2014.5.

>>> 15세이상 경제활동지표

(단위 : 명, %, %p)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 인구	2010년	2,376,431	915,217	855,158	60,059	1,461,214	38.5	6.6	36.0
	2013년	2,457,626	940,379	885,025	55,354	1,517,246	38.3	5.9	36.0
	2014년	2,449,437	970,600	906,267	64,333	1,478,837	39.6	6.6	37.0
	증감	- 8,189	30,221	21,242	8,979	- 38,409	1.3	0.7	1.0
	2010년	40,533,000	25,099,000	24,306,000	793,000	15,434,000	61.9	3.2	60.0
전체 인구	2013년	42,047,000	26,195,000	25,398,000	797,000	15,853,000	62.3	3.0	60.4
	2014년	42,453,000	26,762,000	25,811,000	951,000	15,691,000	63.0	3.6	60.8
	증감	406,000	567,000	413,000	154,000	- 162,000	0.7	0.6	0.4

주 : 증감은 '13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참조

>>> 15세~64세 경제활동지표

(단위 :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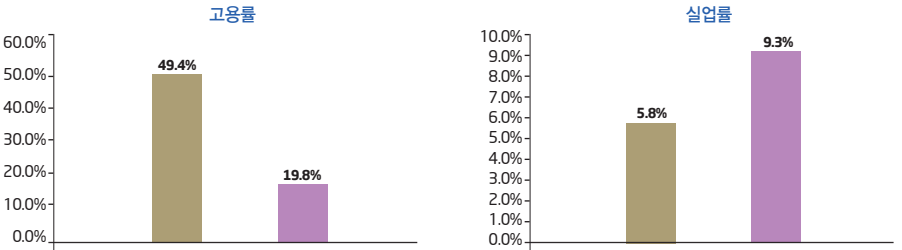
구분	15~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 인구	2010년	1,462,406	731,762	679,849	51,913	730,644	50.0	7.1	46.5
	2013년	1,417,035	715,825	671,501	44,324	701,211	50.5	6.2	47.4
	2014년	1,387,851	755,239	702,362	52,877	632,612	54.4	7.0	50.6
	증감	- 29,184	39,414	30,861	8,553	- 68,599	3.9	0.8	3.2
	2010년	35,162,000	23,374,000	22,599,000	775,000	11,788,000	66.5	3.3	64.3
전체 인구	2013년	35,940,000	24,123,000	23,345,000	778,000	11,817,000	67.1	3.2	65.0
	2014년	36,082,000	24,591,000	23,667,000	924,000	11,491,000	68.2	3.8	65.6
	증감	142,000	468,000	322,000	146,000	- 326,000	1.1	0.6	0.6

주 : 증감은 '13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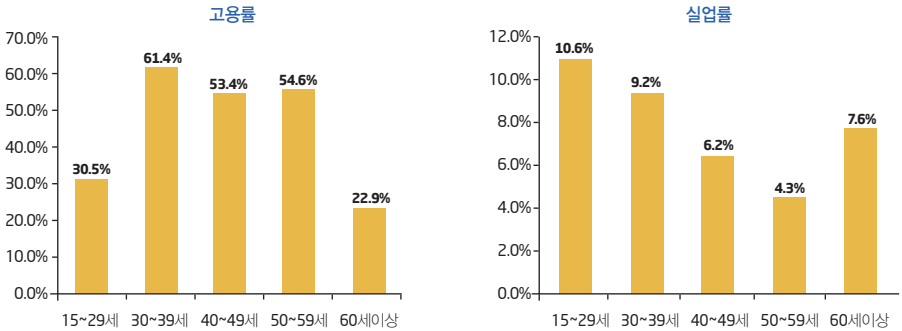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참조

>>> 주요변수별 경제활동지표(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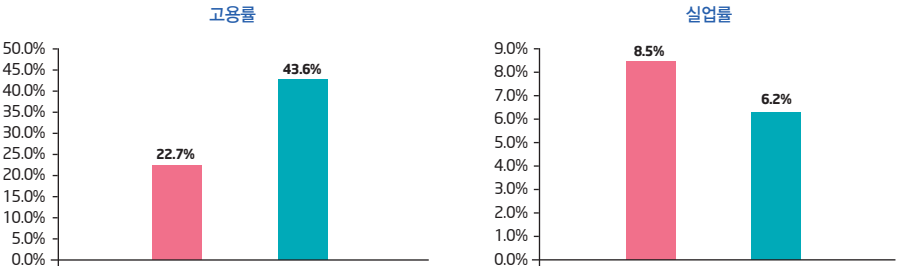
성별 고용률 · 실업률 비교



연령별 고용률 · 실업률 비교



장애정도별 고용률 · 실업률 비교



주 1 :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 장애"는 심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 2014년 5월 기준이며 15세이상 인구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12.

>>> 주요변수별 경제활동지표(2014년)

(단위 : 명, %)

변수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성별	남성	1,420,291	745,663	702,144	43,519	674,628	52.5	5.8	49.4	
	여성	1,029,146	224,937	204,123	20,814	804,209	21.9	9.3	19.8	
연령	15~29세	127,171	43,400	38,779	4,621	83,771	34.1	10.6	30.5	
	30~39세	170,032	114,936	104,389	10,547	55,096	67.6	9.2	61.4	
	40~49세	328,923	187,218	175,660	11,558	141,705	56.9	6.2	53.4	
	50~59세	533,591	304,756	291,570	13,186	228,835	57.1	4.3	54.6	
	60세 이상	1,289,721	320,290	295,870	24,420	969,431	24.8	7.6	22.9	
	15~64세	1,387,851	755,239	702,362	52,877	632,612	54.4	7.0	50.6	
장애 정도	20~64세	1,350,730	752,484	701,212	51,272	598,246	55.7	6.8	51.9	
	중증	771,202	191,338	175,022	16,316	579,864	24.8	8.5	22.7	
	경증	1,678,235	779,262	731,245	48,017	898,973	46.4	6.2	43.6	
장애 유형	신체 외부	지체장애	1,306,400	634,572	596,762	37,810	671,828	48.6	6.0	45.7
		지체 외	245,818	32,298	28,937	3,361	213,520	13.1	10.4	11.8
	감각	시각장애	251,003	114,678	106,841	7,837	136,325	45.7	6.8	42.6
		시각 외	268,542	92,530	85,081	7,449	176,012	34.5	8.1	31.7
	정신적	262,086	65,722	60,675	5,047	196,364	25.1	7.7	23.2	
	신체내부	115,589	30,800	27,971	2,829	84,789	26.6	9.2	24.2	

주 1 :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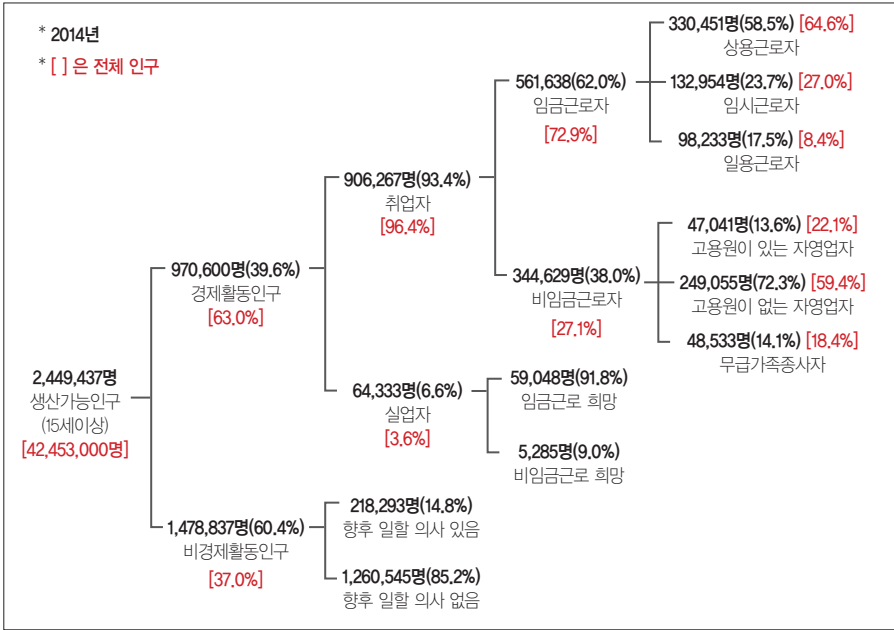
주 2 :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장애를,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장애를,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를, "신체내부장애"는 심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주 3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권"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을 의미함(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인구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 시도"에 편입)

주 4 : 2014년 5월 기준이며 15세이상 인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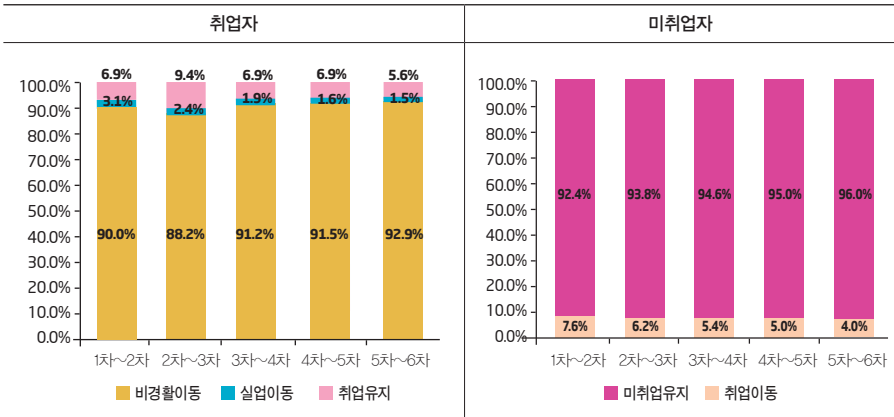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12.

>>> 경제활동상태 구성(2014년)



주 : 2014년 5월 기준이며 15세이상 인구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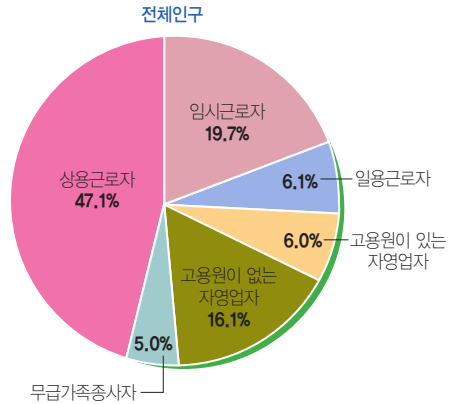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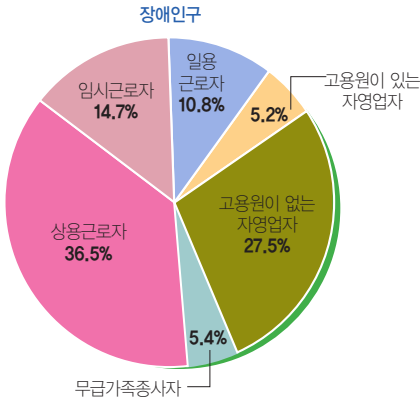
>>> 경제활동상태 이동현황(2014년)



주 1 : 경제활동상태의 판단 기준은 각 차수별 조사 시점의 상태로 판단함. 가령, 5차년도 조사 이후 중사한 일자리가 있었다 해도 6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함
2 : 1~6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6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3년)」, 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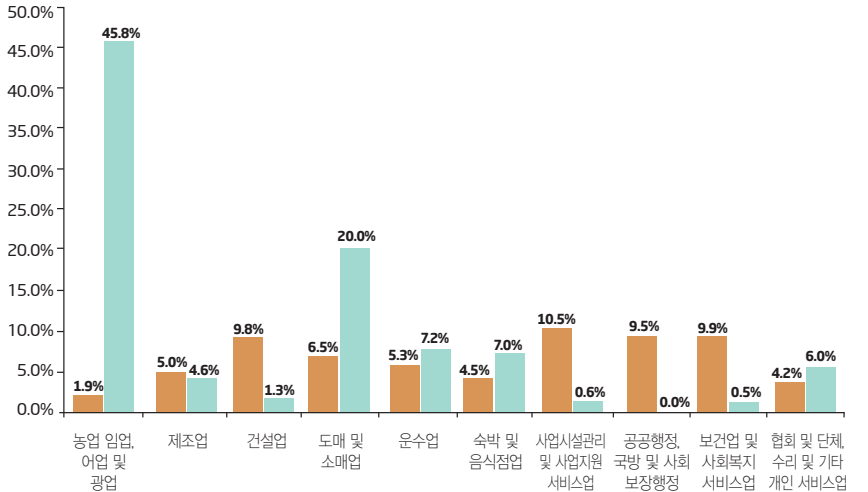
2.2 장애인 취업자 특성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2014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 5월)」, 20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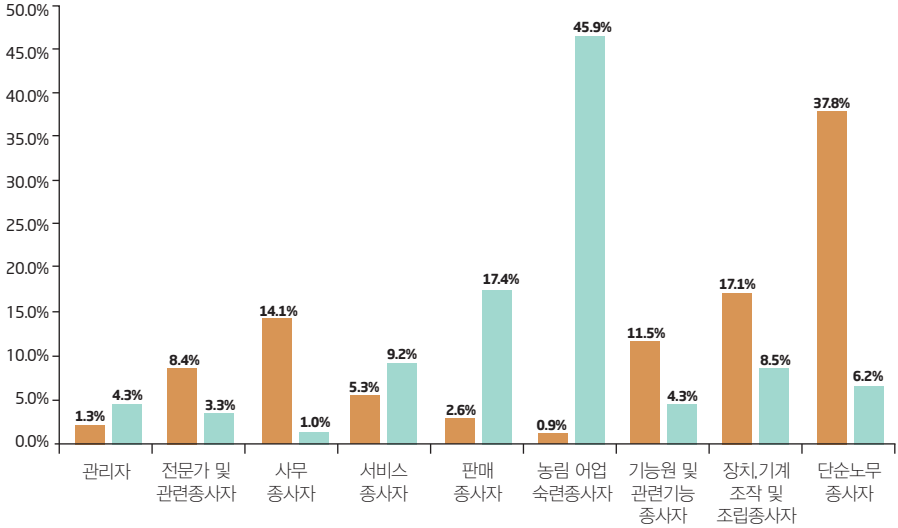
》》 취업자 산업 현황(2014년)



주 : 주요 산업 현황만 나타낸 자료로 총비율 합계가 100이 안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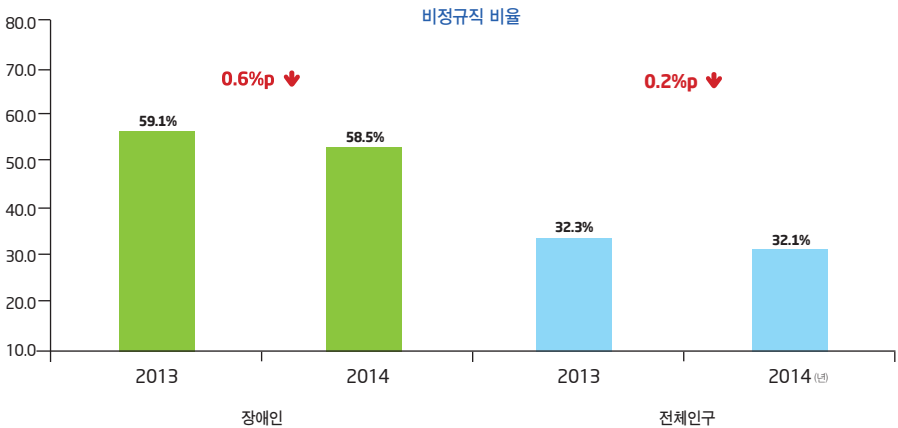
》》 취업자 직업 현황(2014년)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주 : 모를/응답거절을 제외한 자료로 총비를 합계가 100이 안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12.

》》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현황



주 :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중복 가능)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3년 3월, 2014년 3월) 참조

2.3 장애인 고용서비스 욕구

>>> 필요한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반

(단위 :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경제활동상태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419,624	17.1	21.1	67.6	12.5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근로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138,165	5.6	7.5	20.8	3.9
직업능력개발훈련	68,313	2.8	2.3	10.7	2.8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144,987	5.9	6.3	17.8	5.1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	622,704	25.4	28.2	22.7	23.9
창업 지원(창업컨설팅, 창업정보제공, 창업자금 융자 등)	88,161	3.6	6.1	14.8	1.6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	100,672	4.1	5.3	22.8	2.5
기타	15,310	0.6	0.4	0.0	0.8
특별히 없음	1,313,645	53.6	44.2	12.0	61.2
전 체 (추정 수)	2,449,437	-	- (906,267)	- (64,333)	- (1,478,837)

주 : 중복응답으로 총비율이 합계가 100% 안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12.

>>> 필요한 세부 취업지원 서비스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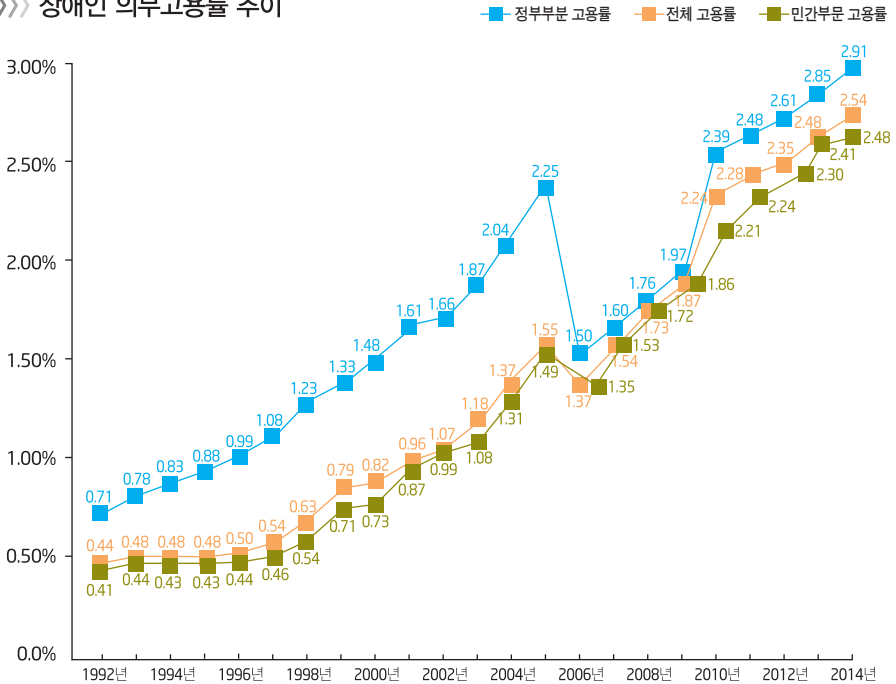
구분	추정 수	비율	경제활동상태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취업알선	317,978	13.0	15.7	57.2	9.4
구직(직업)상담	36,699	1.5	1.3	5.8	1.4
일자리 정보 제공	204,602	8.4	11.1	34.6	5.5
현장실습, 인턴, 연수 등	18,461	0.8	0.4	3.4	0.8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113,039	4.6	5.1	20.5	3.6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86,394	3.5	3.9	14.5	2.8
장애수용 및 심리재활 프로그램	16,526	0.7	0.8	1.6	0.5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제공	14,579	0.6	0.7	1.7	0.5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8,891	0.4	0.5	1.7	0.3
기타	59	0.0	0.0	0.0	0.0
전 체 (추정 수)	2,449,437	-	- (906,267)	- (64,333)	- (1,478,837)

주 1 :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산출된 비율임
 2 : 중복응답으로 총비율이 합계가 100% 안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4.12.

3. 기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3.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이



- 주 1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업주를 모두 포함함
 - 2 :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이 월평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4년부터는 50명 이상으로 확대됨
 - 3 : 2006년부터 정부부분 의무고용 적용직종 확대 및 민간부분 업종별 적용제외를 폐지 확정됨
 - 4 :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2%에서 3.0%로 상향조정
 - 5 : 2014년부터 민간부분의 장애인 고용의무 2.3%에서 2.5%로 상향조정(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0%)
 - 6 :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상징제도(더블기운트)적용한 고용률
 - 7 : 2010년부터 정부부분 고용률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현황이 포함된 수치
 - 8 : 2014년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5%에서 2.7%상향조정,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5%에서 3.0%로 상향조정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4.12.

》》 최근 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전체	정부	민간	전체	정부	민간	전체	정부	민간
2010년	145,535	29,305	116,230	145,981 (126,416)	24,638 (21,403)	121,343 (105,013)	2.24 (1.94)	2.39 (2.08)	2.21 (1.92)
2011년	154,432	29,856	124,040	157,468 (133,451)	26,579 (22,998)	130,889 (110,453)	2.28 (1.93)	2.48 (2.15)	2.24 (1.89)
2012년	172,190	31,443	140,747	168,991 (142,022)	28,545 (24,354)	140,446 (117,668)	2.35 (1.97)	2.61 (2.23)	2.30 (1.93)
2013년	179,330	31,851	147,479	185,745 (153,955)	31,491 (26,357)	154,254 (127,598)	2.48 (2.05)	2.85 (2.38)	2.41 (2.00)
2014년	194,008	35,542	161,466	192,643 (158,388)	32,323 (28,874)	160,320 (131,514)	2.54 (2.09)	2.91 (2.42)	2.48 (2.04)

주 1: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2: 정부부문은 2010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현황이 포함된 수치
 3: 민간부문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 장애인 수는 장애인 근로자 수임
 4: 2014년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5%에서 2.7% 상향조정,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5%에서 3.0% 상향시행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각년도

》》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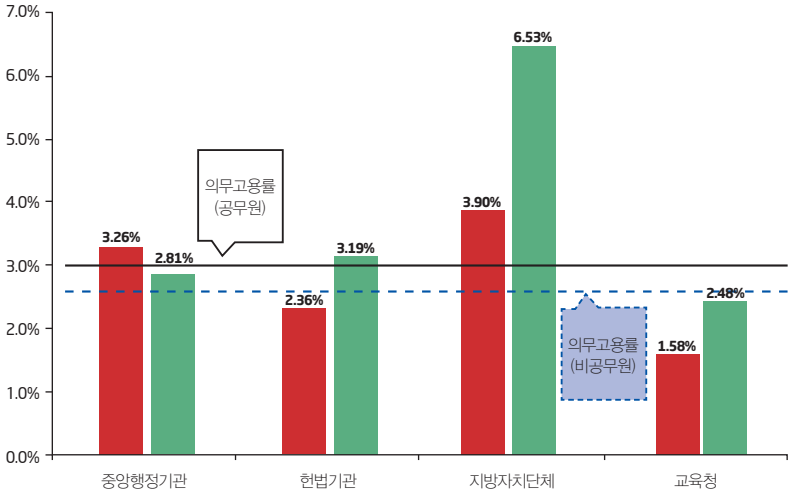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체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체	27,488	7,570,281	192,643(158,388)	2.54(2.09)
정부부문	608	1,110,935	32,323(26,874)	2.91(2.42)
공무원	313	846,270	22,406(19,553)	2.65(2.31)
비공무원	295	264,665	9,917(7,321)	3.75(2.77)
민간부문	26,880	6,459,346	160,320(131,514)	2.48(2.04)
공공기관	532	410,618	11,943(10,604)	2.91(2.58)
민간기업	26,348	6,048,728	148,377(120,910)	2.45(2.00)

주 1: 대상사업주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의무의 주체단위를 말함
 2: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3: 2014년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5%에서 2.7% 상향조정,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5%에서 3.0% 상향시행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5.6.

>>>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4년)

■ 공무원 ■ 비공무원



주 :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적용된 수치 현황임

(단위 : 개소, 명, %)

구분	기관 수	적용대상	장애인 수	고용률	
전체	608	1,110,935	32,323(26,487)	2.91(2.42)	
공무원	소계	313	846,270	22,406(19,553)	2.65(2.31)
	중앙행정기관	49	171,828	5,606(4,832)	3.26(2.81)
	헌법기관	4	24,790	586(533)	2.36(2.15)
	지방자치단체	243	255,595	9,974(8,653)	3.90(3.39)
	교육청	17	394,057	6,240(5,535)	1.58(1.40)
비공무원	소계	295	264,665	9,917(7,321)	3.75(2.77)
	중앙행정기관	32	38,694	1,086(881)	2.81(2.28)
	헌법기관	3	1,097	35(31)	3.19(2.83)
	지방자치단체	243	79,290	5,180(4,129)	6.53(5.21)
	교육청	17	145,584	3,616(2,280)	2.48(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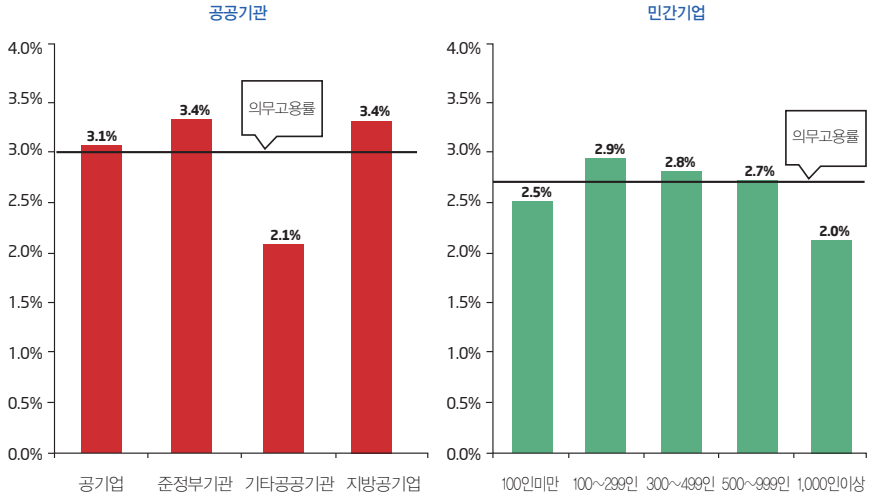
주 1 :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2.0%에서 3.0% 상향조정, 시험실시기관장은 장애인공무원이 3.0%에 도달 시까지 신규채용인원의 6.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2 :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3 : 2010년부터 정부부문에 고용된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제 시행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5.6.

>>>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4년)



주 :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적용된 수치 현황임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체 수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고용률
전체	26,880	6,454,346	160,320(131,514)	2.48(2.04)
공공기관	532	410,618	11,943(10,604)	2.91(2.58)
공기업	30	109,830	3,404(3,128)	3.10(2.85)
준정부기관	87	92,652	3,148(2,759)	3.40(2.98)
기타공공기관	164	130,481	2,744(2,390)	2.10(1.83)
지방공기업	251	77,655	2,647(2,327)	3.41(3.00)
민간기업	26,348	6,043,728	148,377(120,910)	2.45(2.00)
100인 미만	13,615	956,372	23,873(18,734)	2.50(1.96)
100 ~ 299인	9,560	1,567,902	45,037(36,663)	2.87(2.34)
300 ~ 499인	1,482	561,941	14,859(11,943)	2.64(2.13)
500 ~ 999인	1,049	715,442	19,027(15,647)	2.66(2.19)
1,000인 이상	642	2,247,071	45,581(37,923)	2.03(1.69)
30대 기업집단	668	1,260,475	24,012(20,654)	1.90(1.64)

주 1 : 30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소속회사 중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정함

2 :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산정제도(더블카운트) 실시, ()는 2배수산정제 미적용 현황

3 : 2014년 공공기관에 지방공기업이 추가됨

4 : 2014년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5%에서 2.7% 상향조정,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5%에서 3.0% 상향조정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5.6.

3.2 전체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

»»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

(단위 : 개, %, 명)

구분	기업체			상시근로자		
	전체	장애인고용 기업체	고용기업체 비율	전체	장애인	장애인 고용률
전체	1,383,467	62,662	4.5	12,149,124	172,470	1.42

주 1 :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 (장애인 고용기업체 수/전체 기업체 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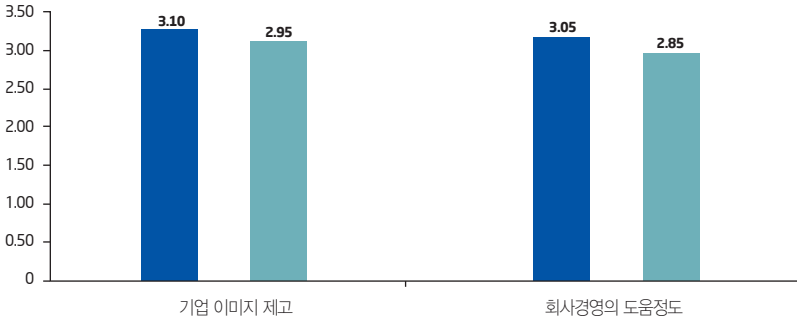
2 :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전체 상시근로자 수)*100

3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대상으로 조사함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4.12.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효과에 관한 인식

■ 고용 기업체 ■ 미고용 기업체



주 1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대상으로 조사함

2 : 고용 및 미고용 기업체 전체 대상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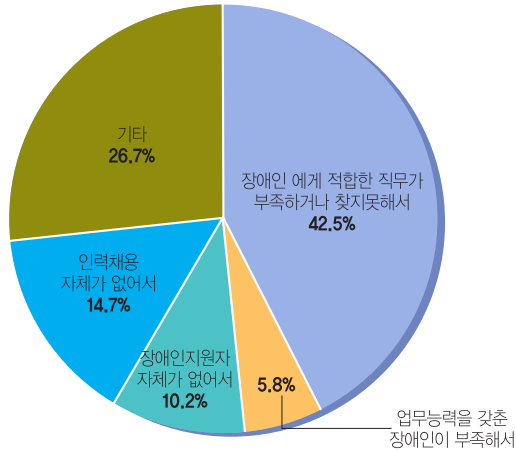
(단위 : 점, 개)

구분	전체 (고용+ 미고용)	장애인고용 여부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부담금 납부대상 (100명 이상)
		고용	미고용	비의무 (5~49명)	의무 (50명 이상)	50~ 299명	300~ 999명	1,000명 이상	
기업 이미지 제고	2.96	3.10	2.95	2.95	3.11	3.09	3.21	3.30	3.18
회사경영의 도움정도	2.87	3.05	2.85	2.86	3.04	3.02	3.16	3.24	3.13
(응답 추정 수)	(389,410)	(40,905)	(348,505)	(364,294)	(25,116)	(22,027)	(2,461)	(628)	(12,356)

주 : 전혀 도움되지 않음 = 1, 보통 = 3, 매우 도움됨 = 5 (5점 척도 기준)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4.12.

》》 장애인 고용 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



주 : 장애인 미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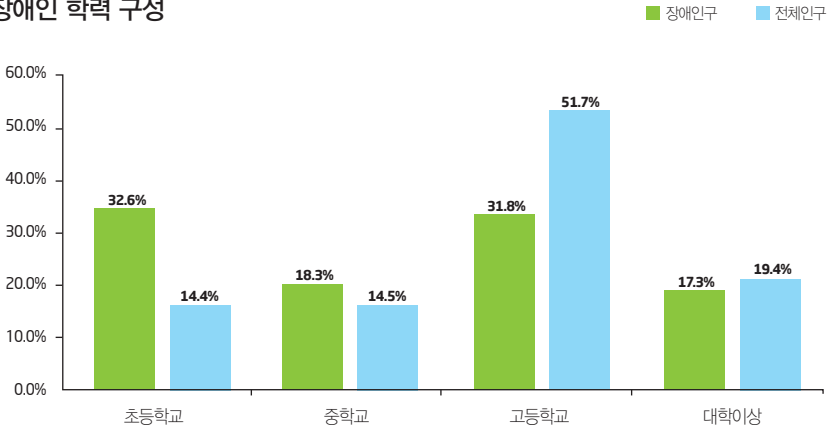
구분	전체 (미고용)	고용의무기업체 여부				부담금 납부대상 (100명 이상)
		비의무 (5~49명)	의무 (50명 이상)	50~ 299명	300명 이상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42.5	42.3	47.2	48.5	10.2	44.1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	5.8	5.0	25.8	25.0	46.9	30.6
장애인 자원자 자체가 없어서	10.2	10.1	13.1	13.2	10.2	9.3
인력채용 자체가 없어서	14.7	15.2	3.2	3.4	0.0	4.6
장애인을 어떻게 채용할지 몰라서	1.0	0.0	0.2	0.2	0.0	0.8
채용 후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0.0	0.0	1.0	1.1	0.0	0.4
장애인용 시설 및 정비·편의시설 등이 부족해서	1.4	1.4	1.2	1.3	0.0	2.2
근무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해서	2.7	2.5	6.0	5.0	32.7	6.4
일시적인 미고용 상태로 향후 즉시 채용 예정임	1.7	1.7	0.7	0.7	0.0	0.7
기타	19.9	20.7	1.6	1.7	0.0	1.0
전 체 (추정 수)	100.0 (105,299)	100.0 (101,185)	100.0 (4,113)	100.0 (3,967)	100.0 (147)	100.0 (1,019)

주 : 고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용의사는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이라고 응답한 기업체에게 응답 받은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4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4.12.

4. 장애인 교육 및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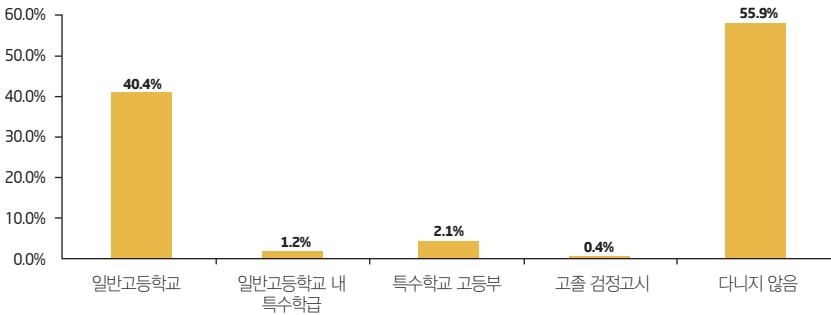
4.1 장애인 교육 현황

장래인 학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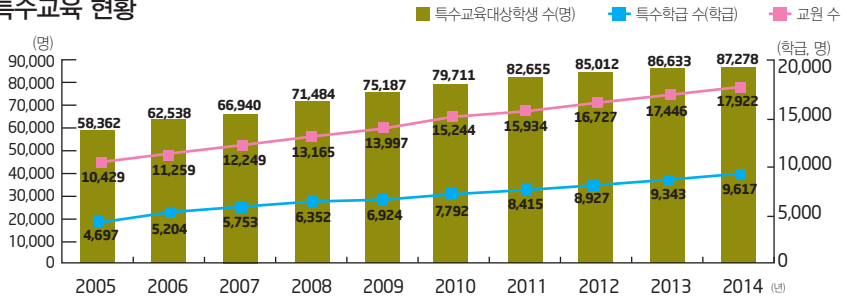
주 1 :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에서 "무학"으로 응답한 정보 제외
 2 : 대학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5.6.

고등학교 수학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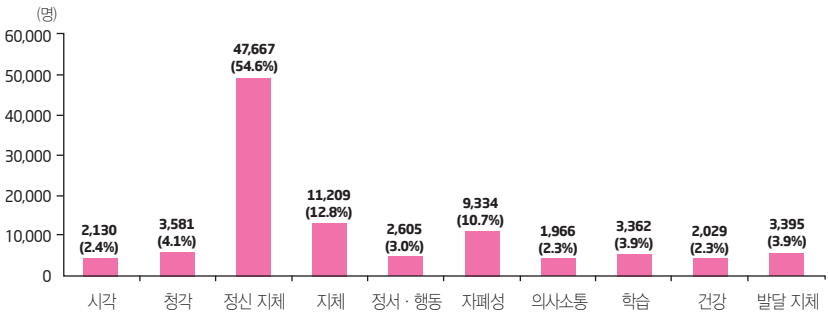
주 1 : 재학, 중퇴, 졸업이 포함된 자료임
 2 : 무응답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5.6.

>>> 특수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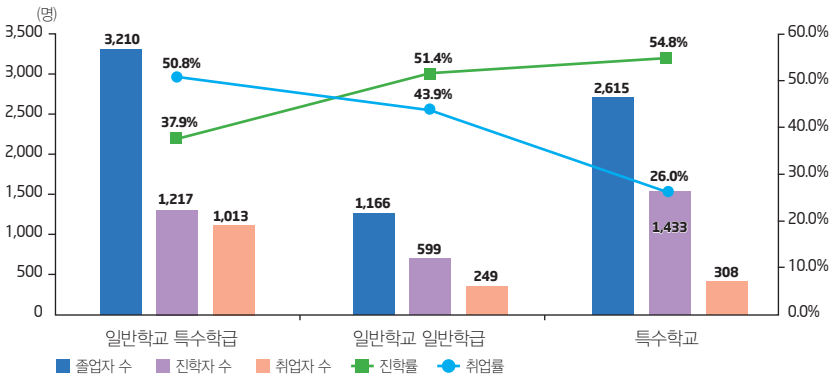
주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함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4.12.

>>>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2014년)



주 : 2009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역별 조사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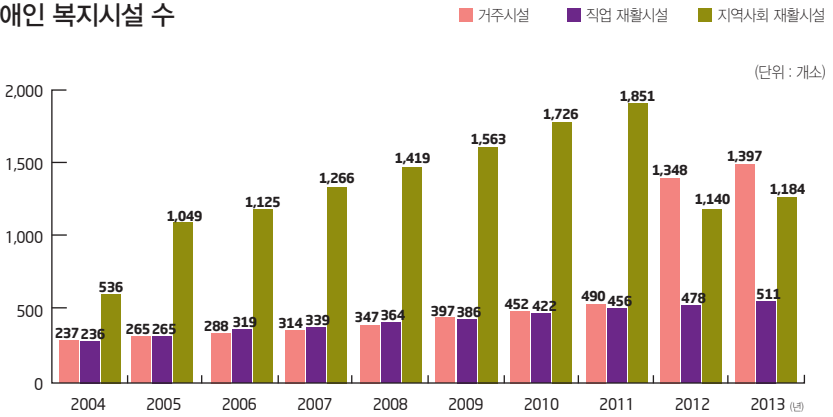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2014년)



주 1 :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취업률 현황임
 2 :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100
 자료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4.12.

4.2 장애인 복지 현황

장래인 복지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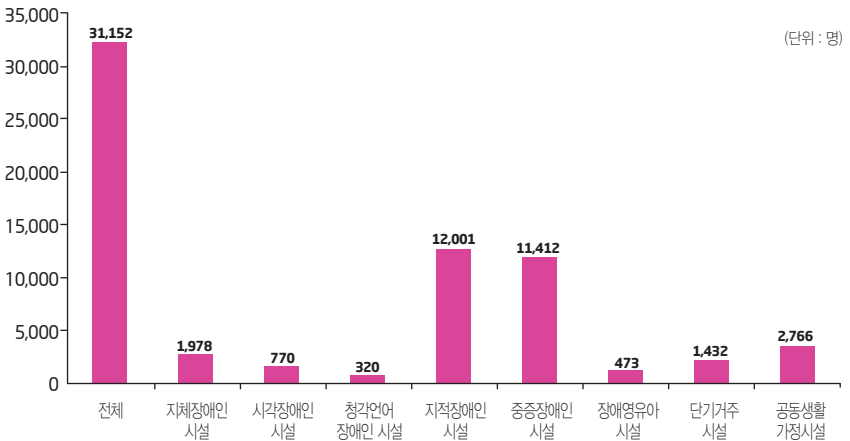


주 1: 각 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주 2: 2012년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로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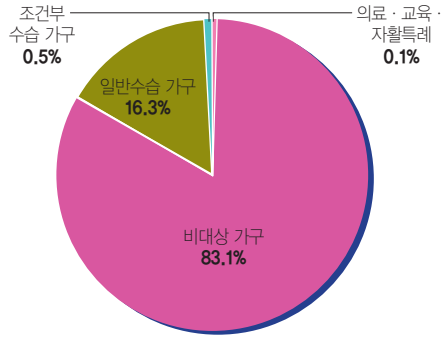
장래인 거주시설 입소인원 현황(2013년)



주 1: 2013년도의 12월 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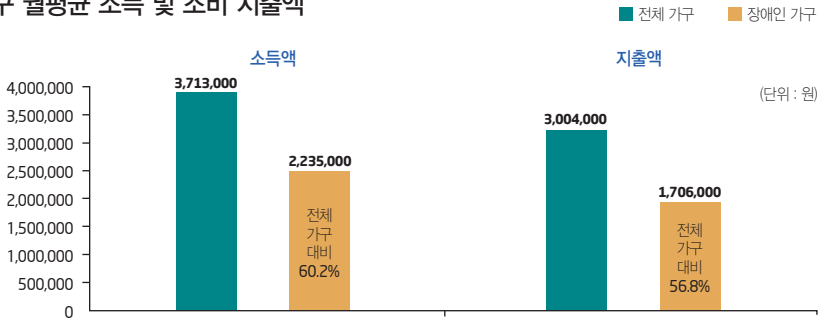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14.

>>>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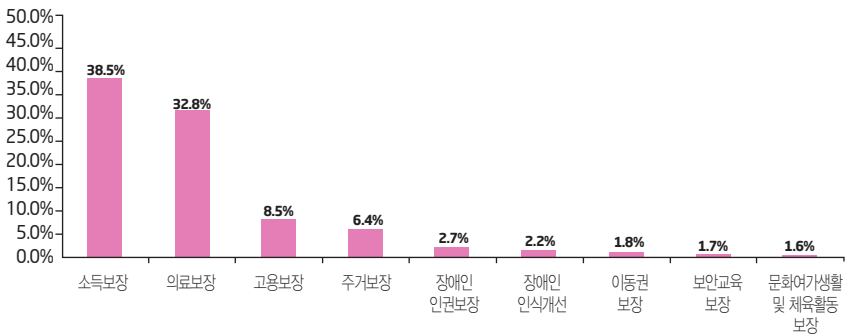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5.6.

>>>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소비 지출액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5.6.

>>> 장애인 복지서비스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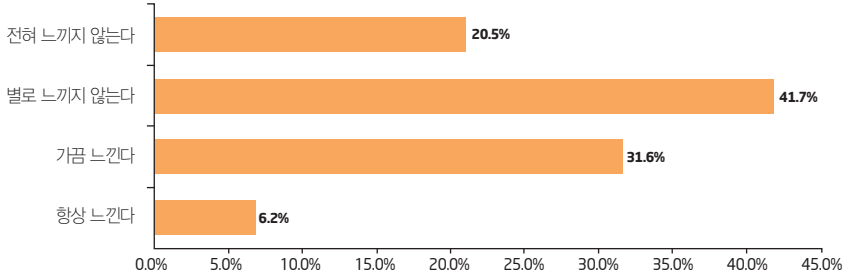
주 1 : 복지서비스 욕구 조사 중 1순위에 해당되는 내용임

2 : 요구사항 비율이 높은 상위 9개만 나타낸 그래프로 전체 비율 총합이 100이 안됨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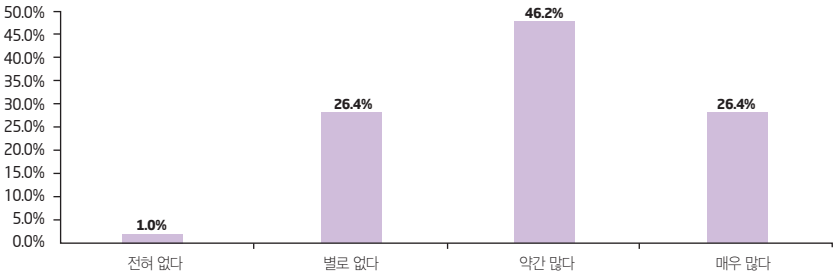
4.3 장애인 일상생활

>>>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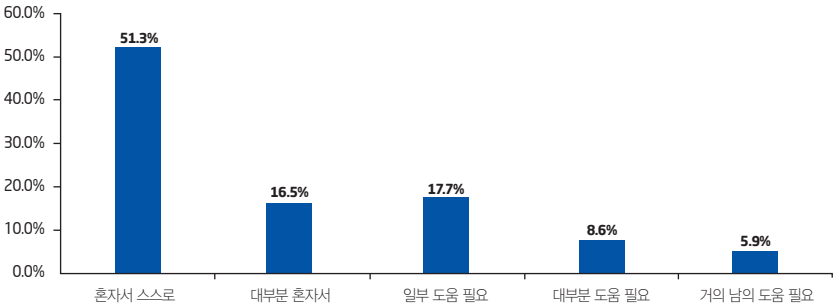
주: 무응답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5.6.

>>>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2014년)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5.6.

>>>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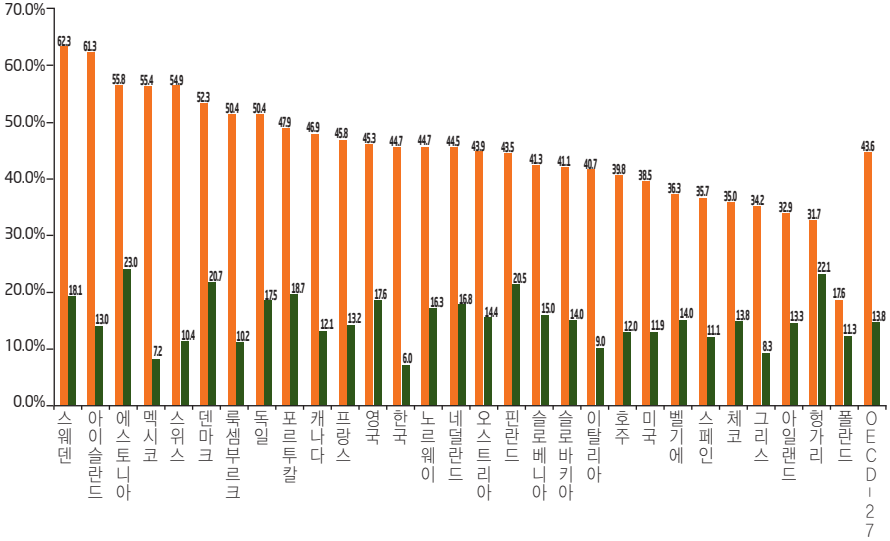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 실태조사』, 2015.6.

5. 해외 장애인 통계

5.1 OECD 장애인 통계

>>> 국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출현율

■ 고용률 ■ 출현율



- 주 1 : 2000년대 중반 20~64세 인구 대비 자가 판정 장애인 비율임
 2 : OECD - 27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임(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 제외)
 3 : 각 국가별 인구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원자료를 참조
- 최소한 6개월 동안 만성 건강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 호주 : 심오한(극심한) 또는 중도(가벼운) 핵심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 캐나다 : 건강 및 활동에 제한(가벼운 활동에서부터 아주 힘든 활동까지)이 있는 자
 - 덴마크 · 노르웨이 : 오랜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자
 - 한국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
 - 멕시코 :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자
 - 네덜란드 : 임금근로를 수행하거나 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지속적인 불만,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자(직업적 장애)
 - 폴란드 : 법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스위스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 영국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 미국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일에 제한을 받는 자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2010.
 원자료 : EU-SILC(Income, Social Inclusion and Living Conditions) 2007(Wave 4)
 호주 - SDAI(Survey of Disability and Carers) 2003
 캐나다 - PALS(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2006
 덴마크 · 노르웨이 - LFS(Labour Force Survey) 2005
 한국 -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멕시코 - ENESS(National Survey of Employment) 2004
 네덜란드 - LFS 2006
 폴란드 - LFS 2004
 스위스 - LFS 2008
 영국 - LFS 2006
 미국 -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2008

5.2 일본의 장애인 통계

장래인 인구 - 장애유형별

(단위 : 만명)

구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신체장애인(2006년)	366.3	357.6	8.7
지적장애인(2005년)	54.7	41.9	12.8
정신장애인(2011년)	320.1	287.8	32.3

주 1 : 정신장애인 수는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뇌전증과 알츠하이머환자 수를 더한 결과임

2 : 신체장애인의 시설장애인 수에는 노인 관련 시설입소자는 포함하여 있지 않음

3 : 자료가 반올림되어 각 항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음(이하 같은 자료에서 동일)

자료 : 내각부, 『2013 장애인백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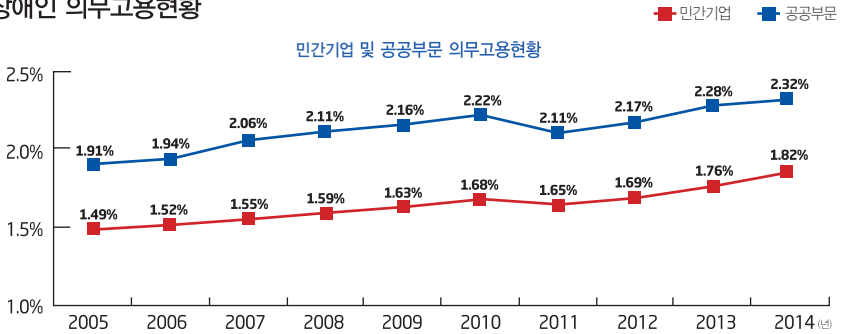
- 신체장애인(재가) - 후생노동성, 『신체장애인(인) 실태조사』, 2006. - 신체장애인(시설입소자) -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2006.

- 지적장애인(재가) - 후생노동성, 『지적장애인(인) 실태조사』, 2005. - 지적장애인(시설입소자) - 후생노동성,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2005.

- 정신장애인(재가, 시설) - 후생노동성, 『환자조사』, 2011.

※ 자세한 내용은 주요 용어 해설(30페이지) 참조

장래인 의무고용현황



주 : 공공부문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2 ~ 2.3%, 민간기업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0%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4.6.

2014년 의무고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기관 및 기업 수	공무원 및 근로자 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전체	89,622	26,409,071	495,210	1.88	41,207	46.0
민간기업	86,970	24,048,815	440,404	1.82	39,004	44.8
정부부문	2,652	2,360,256	54,806	2.32	2,203	83.1

주 1 : 법정 고용의무율은 국가(입법·행정·사법기관)·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기관, 시정촌기관)·공공기관(독립행정법인 등)은 2.3%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2.2%, 민간기업은 2.0%임

2 : 공공기관이란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말함

3 :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4 : 장애인공무원 및 근로자 수는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을 더블카운트한 것이며, 중증 이외의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로 계산함

5 : 201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 후생노동성,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2014.

5.3 독일의 장애인 통계

>>> 장애인 인구 - 연도별

(단위 : 명)

연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장애인 수	6,711,797	6,638,892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주 : 독일에서 장애판정의 기준은 "Versorgungsmedizin-Verordnung"(VersMedV, 케어의 조례)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 장애 영역 별로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 GdB)에 따라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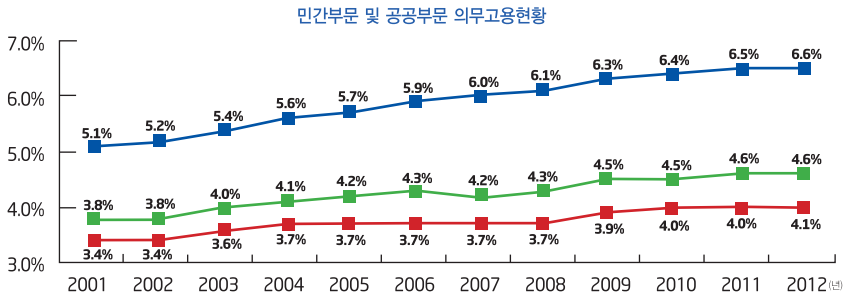
-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6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전형적인 상태와는 차이가 상당하고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지장이 있는 사람
-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담당기관(부양사무소, Versorgungsamt)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주로 의학적 판단)
- 준중증장애인 : 장애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 장애인 중에서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사무소(Arbeitsamt)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학적 판단 + 직업재활적 접근)

자료 : 연방 통계청, 「중증장애인 통계」, 2013.

※ 자세한 내용은 주요 용어 해설(30페이지) 참조

>>>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 전체 ■ 민간부문 ■ 공공부문



주 :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일부 공공기관 6%)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 2012년 의무고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고용주	적용대상 근로자 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인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	고용률
전체	145,708	21,439,149	1,034,840	995,717	4.6
민간부문	134,231	16,543,645	789,528	673,457	4.1
정부부문	11,477	4,895,505	245,213	322,260	6.6

주 1 : 상시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2 : 공공부문 중 연방기관을 비롯하여 일부 기관들은 6%임

3 : 공공부문을 아래의 기관을 의미함

- 모든 최고연방기관과 그 하위기관, 연방대통령실, 연방의회와 연방참의회 사무처,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 연방법원, 연방검찰청, 연방철도청
- 모든 최고 쾨기관과 정부 및 주지사청, 그 하위기관, 쾨회의 사무처, 감사원, 쾨헌법기관과 기타 인사행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쾨기관
- 기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지방단체의 연합체
- 기타 모든 공법(公法) 상 법인(法人), 공단(公團), 재단(財團)을 의미

자료 : 연방노동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2013.

5.4 미국의 장애인 통계

>>> 장애인 인구

(단위 : 명)

구분	전체	장애인	비장애인
인구 수	311,158,104	39,137,986	272,020,118

주 1 :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인지장애, 보행장애, 자기관리(self-care)장애,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장애를 말함

2 : 각 수치는 추정치이며 2013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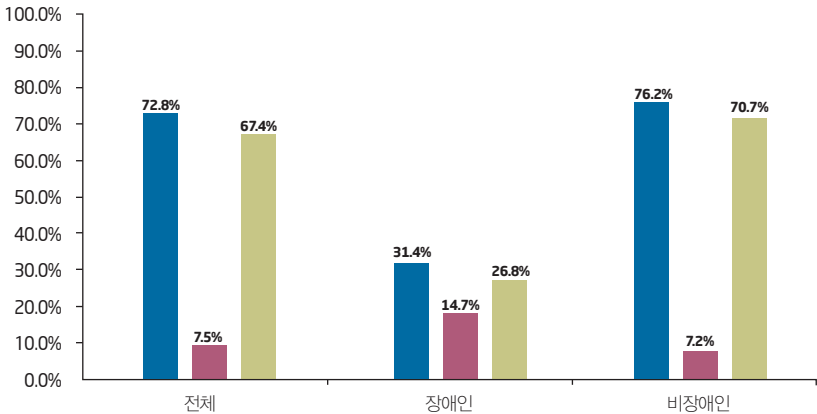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4.

☞ 자세한 내용은 주요 용어 해설(30페이지) 참조

>>>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장애인 and 비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비교



(단위 : 천명, %)

구분	16~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202,267	147,273	136,248	11,026	54,994	72.8	7.5	67.4
장애인	15,450	4,858	4,145	713	10,592	31.4	14.7	26.8
비장애인	186,817	142,415	132,103	10,313	44,402	76.2	7.2	70.7

주 1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6~64세 인구)×100

2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3 : 고용률(%)=(취업자/16~64세 이상 인구)×100

4 : 2013년 기준임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4.

5.5 호주의 장애인 통계

>>> 장애인 인구

(단위: 천명)

구분	전체	장애인
2009년	21,865	4,026
2012년	22,920	4,233

주 1: 2013년 11월 발표자료 기준이고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전체인구는 2014년 9월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발표한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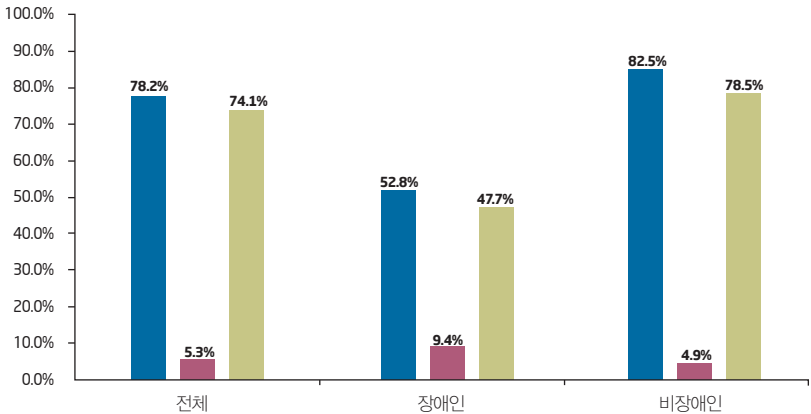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isability, Ag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 2012」, 2013.

※ 자세한 내용은 주요 용어 해설(30페이지) 참조

>>>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비교



(단위: 천명, %)

구분	16~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소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15,322.8	11,986.3	11,348.4	639.3	3,334.5	78.2	5.3	74.1
장애인	2,204.0	1,163.6	1,052.3	109.6	1,041.7	52.8	9.4	47.7
비장애인	13,117.9	10,824.4	10,296.5	527.6	2,294.2	82.5	4.9	78.5

주 1: 2013년 11월 발표자료 기준이고 각 수치는 추정치임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6~64세 인구)×100

3: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4: 고용률(%)=(취업자/16~64세 이상 인구)×100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isability, Ag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 2012」, 2013.

》》 주요 용어 해설

1. 장애인구 현황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자

장애유형 16개 유형으로 구성(간장애, 뇌전증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장루, 요루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장애인관련 법령상의 중증장애인 정의는 서로 상의하여 적용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

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15세 이상 인구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중 제외자(현역군인, 재소자 등)를 제외한 인구로 노동가구 인구로 분류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취업자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일시휴직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적극적 구직활동**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

경제활동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임금근로자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설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임시근로자**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

3. 기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의무인원(명) = 적용대상인원(명)×고용의무율(2~3%) (소수점 이하 절사)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수(명)/적용대상인원(명))×100 (소수점 셋째 반올림)

4. 장애인 교육 및 복지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

-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전공과** 특수학교(급)의 고등부 과정을 졸업한 학생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

특수교육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특수교육 담당교직원의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특수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등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및 주거시설임. 따라서 수용시설이 아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중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6개소, 각 시·도 1개소)은 통계에서 제외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이 있음(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규모, 종류, 형태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므로 시설 수만 가지고 복지수준을 판단 할 수 없음)

일반수급가구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의료·교육·자활특례 제외(조건부 수급자 가구 포함)

- **의료**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교육**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자활**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3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

가구 월평균 지출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공공금, 내구재구입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산한 금액

5. 해외장애인 통계

일본

신체장애인

- **중증** 신체장애인 수첩 1, 2급인 자
- **경증** 신체장애인 수첩 3~6급인 자

지적장애인

- **중증** 교육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A1, A2, 1급, 2급 등인 자
- **경증** 교육수첩 등의 장애정도가 B1, B2, C, 3급, 4급인 자

일본 법정 고용률

- **민간기업** - 일반 민간기업(50명 이상 규모의 기업) 2.0%
- **공공기관**(43.5명 이상 규모의 특수법인 및 독립행정법인) 2.3%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43.5명 이상 규모의 기관) 2.3%
-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45.5명 이상 규모의 기관) 2.2%

근로자 수(법정 고용 장애인 수 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 전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율에 상응하는 인원(신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 정해진 비율로 곱해서 얻은 수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말함

실고용률 장애인 수/근로자 수×100

독일

연방노동공단(Bundesagentur for Arebit) 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 촉진, 고용 창출, 실업 수당 및 실업부조 등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장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중증장애인 장애정도(Gab)가 50/100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독일에서 장애판정의 기준은 'Anhaltspunkte for die ortzliche Gutachtertigkeit'(장애의 의학적 판정을 위한 기준)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 장애 영역별로 장애정도에 따라 점수가 차등화되어 있음. 장애정도는 각 장애 영역별로 10부터 100까지 10단위로 나뉘어 있음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2000년까지는 16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상시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6%이상 고용해야 함
- 2001년부터 법정 고용의무를 인하여 일부 연방 정부기관(6%)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5% 이상의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독일 「사회법정 제9권」을 일부 개정하여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며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훈련자리를 제공할 경우 중증장애인 2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함

미국

취업인구(Employed persons) 1) 조사기간동안 유급노동자, 자기경영자 또는 15시간 이상 가족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우 2) 직업은 있으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나 병, 자연재해, 휴가, 양육 문제, 노동분쟁, 모성/부성 휴가 또는 다른 가족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쉬는 동안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지에 대해서는 불문함) 각각 한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취업인구로 계산됨. 집안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집안일, 페인트칠, 수선 그 외), 종교와 관련된 자원 봉사활동, 자선활동 등 이와 비슷한 기관에서의 활동의 경우는 제외함

실업인구(Unemployed persons) 1) 조사기간 동안 일을 가지지 않으며 2) 일시적인 전환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며 3) 조사기간으로부터 4주 동안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이 구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의 사람을 뜻함. 입사대기자의 경우에는 실업인구로 분류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취업중이거나, 실업중인 사람 모두를 뜻함

실업률(Unemployment rate)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인구의 비율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전체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전체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

비경제활동인구(Not in the labor force) 취업이나 실업상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호주

취업 특정주간 동안(면접 날짜보다 앞선 한 주) 직업, 사업 또는 농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사람이거나 일하지 않았지만 특정 주간동안 직업이 있었던 경우

실업 특정 기간 동안 15세 이상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단, 구직활동을 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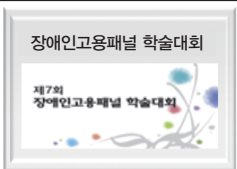
실업률 그룹 안에서의 노동력(예를 들면, 취업인+실업인)으로 표현되어 지는 사람 안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수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노동력조사에서는 어떤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집단안의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대비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예, 취업자, 실업자)의 비율, 보고서는 16세에서 64세의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음

비경제활동인구(Person not in the labour force) 조사기간동안 취업상태도 아니고, 실업상태도 아닌 사람들. 집을 지키는 사람(무급), 은퇴한 사람, 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 중인 사람,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기관에 있는 사람, 수도자, 조사기간 동안 배심원이나 무급자원봉사활동이 활동의 전부인 사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 주 소 (우)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59
- 연락처 (031) 728-7197
- 팩 스 (031) 728-7143

구 분	이용 시기 및 내용
 <p>장애인고용패널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 9월 보고서 및 데이터 무상 배포 • 장애인의 경제활동관련 동태적 통계자료 생산 •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p>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보고서 배포 및 데이터 무상 배포 •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관련 규모 추정과 고용 실태, 고용요인, 서비스 욕구 파악
 <p>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보고서 배포 및 데이터 무상배포 •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 조사 • 장애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및 실태 파악
 <p>EDI 장애인 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통계집 배포 • 국내외 장애인 관련 최신 통계자료 수록
 <p>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5. 11. 5. (목) 12 : 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기획주제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유인) 및 일반 주제 발표(대학원생 논문 경진 대회 개최)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Tel : 031-728-7108)

더 자세한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http://edi.kead.or.kr>)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방문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